변경 사항 개요

본 규정서는 본 규정서의 게시 날짜로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2010년 3월 24일자 교육감 규정서 D-160을 갱신 및 대체한다.

변경 사항:

- 다음은 뉴욕시 고등학교 위원회 (Citywide Council on High Schools: CCHS)에서 위원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후보의 자격 요건을 변경한다. 후보자는 반드시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이어야 한다. 후보 자격은 부모가 CCHS에서 후보 출마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페이지 1 섹션 I.A.1 참조)
- 이해의 충돌 관련 조항은 교육감 규정서 D-125에 따라 업데이트 되었다. (See pages 1-2, Section 1.A.3.c)
- 후보자는 한 개 이상의 커뮤니티 및/또는 뉴욕시 교육 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복수 지원은 허용되나 한 개 이상의 위원회에서 봉사할 수는 없다. 신청 접수 시 복수의 위원회에서 봉사하고자 지원하는 후보자는 반드시 선호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명시해야 한다. 한 개 이상의 위원회에 조건부 선출된 후보자 는 조건부 선출된 위원회 중 가장 높은 순위로 명시한 위원회에 배치된다. (페이지 2, 섹션 II.A 참조)
- 후보자는 현재 자녀가 재학중인 각 공립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지원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후보자는 각 학교의 대표로 간주된다. 후보자가 대표하게 되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교육감 재량에 따라 자격박탈의 사유가 된다. (페이지 2, 섹션 II.B 참조)
- 선출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되었다: 권고 투표가 절차에서 삭제되었으며 보로장 위원회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후보자 포럼 실시에 대한 절차가 업데이트 되었다. (페이지 2, 섹션 IV 참조)
- 후보의 자녀가 각기 다른 보로에서 공립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다면 후보자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각 보로의 투표용지에 이름을 등재할 수 있다. (See page 3, Section V.A.1, FN 4)
- 복수의 보로를 대표하는 후보자는 CCHS에서 하나의 보로만을 대표하도록 선출될 수 있다. 복수의 보로를 대표하도록 조건부 선출된 경우 후보는 반드시 자신이 대표하고자 하는 보로를 선택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보로에서 고려대상에서 제외된다. (See page 3, Section V.A.2, FN 5)
- 같은 학교에서 복수의 후보가 선출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1개 이상의 의석이 충원되지 않아 결선 투표가 필요한 경우 이미 선출되지 않고 자녀가 이미 CCHS에 대변되지 못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후보자가 결선 투표에 입후보할 자격을 가진다. (See page 3, Section V.A.3.b)
- 복수의 결선 투표가 필요한 경우 결선투표는 별도의 그룹으로 나뉘어 동시에 진행되며 규정서의 요건에 따라 후보자가 분류된다. (See page 3, Section V.A.3.d)

- 뉴욕시 특수교육 위원회 (Citywide Council on Special Education: CCSE) 지명자로 CCHS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후보는 반드시 가정 및 커뮤니티 참여 지원부(Division of Family and Community Engagement: FACE)에 지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See page 4, Section V.B)
- 뉴욕시 영어학습학생 위원회 (Citywide Council on English Language Learners: CCELL) 지명자로 CCHS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후보는 반드시 가정 및 커뮤니티 참여 지원부(Division of Family and Community Engagement: FACE)에 지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See page 4, Section V.C)
- 공익 대변인(Public Advocate) 임명 CEC 위원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반드시 공익 대변인 사무실에 지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See page 4, Section V.D)
- CCHS 공석 충원에 관심이 있는 개인은 반드시 CCHS 또는 가정 및 커뮤니티 참여지원부 (Division of Family and Community Engagement: FACE)에서 지원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See page 5, Section IX.A.2)
- “가정 참여 지원실(OFEA)”은 "가정 및 커뮤니티 참여지원부(Division of Family and Community Engagement: FACE)”로 변경된다.